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Q&A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팀

목차

1 • 개인간 계약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2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3 • A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B사업장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B사업장과 체결한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4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되나요?

5 •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6 • 계약서 상 공연기간 며칠만 기재되었는데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7 • 제도 시행 이후 기존의 계약서를 전면 재작성해야 하나요?(간이계약양식 첨부)

8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되나요?

목차

9 •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취득일은 언제이며, 월평균보수는 얼마인가요?

10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에서 연주하는 경우 적용대상인가요?

11 • 공연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공연을 하고 당일 보수를 지급받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있는 경우 적용대상인가요?

12 •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50%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실제 공연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신고 해야 하나요?

13 • 외국인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될 수 있나요?

14 •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 등에 선정 및 관리권한을 위임한 다음 지역문화재단 등이 작가팀과 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신고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15 • 기성립된 고용보험관리번호로 예술인을 취득신고하나요?

16 • 제작사, 메니지먼트사, 예술인 3자 계약시 신고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목차

17 • 다수의 예술인 취득신고시 편리한 방법이 없는지요?

18 • 예약기간 중 1개월을 쉬는 경우 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19 •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보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월평균소득 30만원, 60만원, 90만원, 100만원, 200만원일 때 월평균 보수는 얼마인가요?

20 •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 여부보다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문화예술활동(노무) 해당여부가 중요합니다.

-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과 관계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문화예술활동(노무)을 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활동 증명 여부보다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문화예술활동(노무)인지가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2.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다른 사람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면서 예술인 자신의 업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다른 예술인 또는 예술인이 아닌 사람)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다른 사람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면서 예술인 자신의 업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다른 예술인 또는 예술인이 아닌 사람)을 사용한다는 뜻으로, 예술인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이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사용기간、방법 등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나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하면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시적、일회적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3. A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이지만 B사업장에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예술인의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모두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4.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0. 12. 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되며,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제도 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20년 9월 11일부터 2021년 9월 10일(1년)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 9개월간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본인 의사가 아닌 회사 의사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도시행일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9월 10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9.07개월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2021년 1월~8월(8개월)+[(22일+10일)/30일]=9.07개월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이를 빌미로 보수를 낮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면계약이 원칙이며, 간이계약양식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계약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조사권、시정명령권을 가지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화예술용역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주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이를 빌미로 보수를 낮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면계약이 원칙이며, 간이계약양식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은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하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는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대해 신고할 의무와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만약 신고납부의무자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데도 예술인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거나 또는 예술인 고용보험료를 빌미로 예술인의 보수를 낮게 책정하여 거짓으로 계약 및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등에 따른 처벌과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의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6.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공연을 하는 며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때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연습기간은 포함되지 않나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단기예술인으로 신고합니다.

- 하루 또는 단기간(1개월 미만) 공연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단기예술인으로서의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사업주와 예술인 간 맺은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연습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연습기간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7.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의 계약서를 각 사업장에서 다시 전면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계약이 필요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계약기간이나 보수지급방식에 대해 미비한 측면이 있으면 수정계약이 필요합니다.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한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을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일반)

※ 동 양식는 사업주의 문화예술용역 의뢰에 따라 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사업주와 체결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이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형화하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견본적 계약양식이므로, 예술계 현장에서는 동 양식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적용,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법률적인 감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당사자	사업주		업체명	전화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주 계약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 계약 당사자(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 계약 당사자(2)**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계약당사자인 예술인이 1인일 경우 주 계약당사자란만 작성

** 동 계약이 정한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인을 보조하여, 해당 문화예술용역의 완성을 위해 일정 부분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총칭함
(주 계약당사자인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을 보조하는 예술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다수의 부 계약당사자가 있는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사업주는 계약의 상대방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신고 등 피보험관리를 위해,*
동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과 복수의 문화예술용역이 포함된 일괄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주 계약당사자)의 용역 외에 이를 보조하는 예술인(부 계약당사자)의 용역이 포함된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용역을 담당하는 예술인 또한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야 함
(하나의 계약서 또는 계약 당사자인 예술인별 각각의 계약서 모두 가능)

★ *동 계약기간 중 부 계약당사자인 예술인(보조)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 등 계약 당사자의 변경 발생 시, 사업주와 예술인(주)는 동 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갱신된 계약서에 따른 피보험관리(고용보험 신고 등)를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함*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에 따른 업무·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획·분석, 연습, 자료수집 등 실질적인 업무·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정함 * 예술인인 계약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 계약기간을 달리하여 작성
	가. 주 계약당사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부 계약당사자(1)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부 계약당사자(2)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기타 사항: ※ 계약기간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명시
2. 계약대상 (업무내용)	① 업무·과업의 내용 : ※ 예술인 계약당사자(주, 부)가 다수일 경우, 각 계약당사자별 내용 기재 ② 기타: ※ 업무수행에 관한 시간, 장소 등 특정이 필요할 경우 명시
3.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 : (총)원** ★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은 계약금액 중 예술인의 노무제공(인건비성 금액으로 노무 제공을 위해 수반되는 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산정)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 등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계약금액 설정(예: 문학 및 만화분야의 저작권료, 인세, 출판대금 등, 미술분야의 일괄 용역대금 등)이 아닌 노무제공 관련 비용과 노무제공과 관련없는 비용(기타비용 등)을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가. 주 계약당사자 ( )원**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2 기타비용 (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나. 부 계약당사자 1 ( )원** ※ 부 계약당사자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2 기타비용 (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다. 부 계약당사자 2 (　　)원**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2 기타비용 (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② 지급방식 : [　] 현금으로 직접 지급 [　] 예술인 명의 통장 입금(은행:　　,계좌번호:　　) ③ 지급시기 : 선급금　　원(　년　월　일까지 지급) 중도금　　원(　년　월　일까지 지급) 잔금　　원(　년　월　일까지 지급) 월 단위지급　　원(매월　　일까지 지급) ④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 및 예술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⑤ 기타 사항 :
4. 권리·의무	①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해지 포함)하는 경우 예술인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등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사항*은 다음에 명시한다. 예) 저작권 등 권리의 귀속, 수익의 배분, 위임, 책임면제, 자격의 확인, 보증, 보험,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 (1) 사업주의 권리·의무 _____ (2) 예술인의 권리·의무 _____
5. 계약의 갱신·변경 및 해지	① ※ 계약의 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해 특정이 필요할 경우 명시

6.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①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경우 예술 분야별 분쟁해결 절차 또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에 따라 해결한다.
7. 계약의 효력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별 문체부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상기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 및 보관한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2항, 제5조의2 이행).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예술인(주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예술인(부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예술인(부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8.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과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개인간 계약 시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간 계약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관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실질적인 업(業)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인 개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9. 드라마 제작으로 작가와 문화용역예술 관련 계약 시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작품 제작편수만 정함), 용역대가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계약금은 지급하는 경우 취득일은 언제이며,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간이 계약 양식을 통해 계약기간 등을 상호 합의하시고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계약기간 등이 정해지지 않아 고용보험에 취득신고를 하기 위한 취득일자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간이 계약 양식'을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내용을 상호 협의하신 후에 이를 근거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는 '간이 계약 양식'에서 합의된 계약기간(노무제공일) 시작일입니다.
- 월평균보수는 예술인에게 지급할 총금액에서 필요경비 20%를 공제한 후 종사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9. 드라마 제작으로 작가와 문화용역예술 관련 계약 시 계약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작품 제작편수만 정함), 용역대가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계약금은 지급하는 경우 취득일은 언제이며,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월평균보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에게 지급할 총 금액 * 0.8(필요경비 20% 공제 반영) / 종사월수
- (사례) 예술인에게 지급할 총 금액 1,000만원, 계약기간 '21. 1. 1. ~ 6. 30.(6월)인 경우
  - 1,000만원 * 0.8 / 6 = 1,333,333원(월평균보수 산정 시 원단위 미만 절사)

10.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에서 연주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요?

연주하는 곳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적용 가능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제19조에 의하면 "대중음악의 경우 재즈클럽, 라이브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인정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이 연주하는 곳이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곳이라고 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1. 매일 공연장 등에서 필요할 때마다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당일 보수를 받는데 수입이 어떤 달은 50만 원 이상이지만 어떤 달은 50만 원이 안 되어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매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단기예술인이라고 하는데, 예술인 고용보험은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예술인의 모든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보험료 부과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부여됩니다.

12.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약한 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실제 공연을 하지 않았는데 예술인 고용보험 취득 신고해야 하나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상 사전연습기간 등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은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여지고,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 상 계약기간 등의 명시 없이 공연 회차에 대해서만 명시하여 계약하였다고 한다면 지급된 금액은 위약금 등의 성격이 강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3. 외국인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체류자격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제2조제4항에 의하면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아래의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14.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작가팀을 선정 및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화재단 등에 선정 및 관리권한을 위임한 다음 지역문화재단 등이 작가팀과 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신고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작가팀이 신고납부의무자입니다.

-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공공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지역문화재단이 작가팀에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발주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정부·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작가팀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은 작가팀의 대표자가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문화재단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발주하고 지역문화재단이 원수급인으로서 작가팀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라면 정부·공공발주사업 특례가 적용되어 지역문화재단이 신고납부의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15. 기존 고용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기성립된 고용보험 관리번호에 예술인을 취득신고하는 것인가요?

예술인 사업장관리번호를 별도로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달리 실업급여사업만 적용되고 보험료 산정에서도 일정 보수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보수가 적용되는 등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용보험관계가 기성립된 사업장에서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활한 피보험자 관리와 보험료 산정 편의 등을 위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예술인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예술인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6. 제작사에서 매니지먼트사、예술인과 3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니지먼트사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직접하게 할 수 없나요?

제작사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매니지먼트사에서 예술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수익배분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여전히 예술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는 사업주인 제작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취득신고 대상 예술인이 다수인 경우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신고하시면 편리하게 취득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없음) →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취득(고용) 신고 → 취득신고 작성방식 "엑셀파일 불러오기" 선택 → "샘플파일 다운로드" 및 다운로드한 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18.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약기간 중 1개월을 쉬게 되어 계약종료일도 연장된 경우, 휴직처리가 가능한가요 ?

현재 예술인에 대한 휴직제도는 정해진 바 없으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 현재 예술인에 대한 휴직제도는 정해진 바 없으나, 휴직기간 등 용역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를 중지할 수 있도록 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휴직기간 등에 동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면 용역계약 종료 시에 정산을 통하여 휴직기간 동안 과납한 보험료는 환금됨을 알려드립니다.

19. 월평균소득과 월평균보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에서 필요경비 20%를 제외한 금액이 보수입니다.

- "월평균소득"이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대상입니다. 월평균소득은 월력상 '월'을 단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총소득을 개월 수로 나눠서 산정하고, '월'을 단위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총소득 ÷ 계약기간(총 일수) × 30일 " 산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월평균보수"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총 소득금액(계약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보험료산정대상 보수를 산정합니다. 전년도부터 종사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종사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당해연도 신규 종사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개시된 날부터 1년(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계약기간)간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근로(노무) 제공 개시월의 종사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해당월을 제외합니다.

19.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각각의 월평균소득이 각각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인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 소득에서 필요경비 20%를 제외한 금액이 월평균 보수입니다.

- 월평균소득이 30만 원인 경우 소득이 고용보험 적용기준인 50만 원 미만이므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이 60만 원인 경우 경비 12만 원(60만 원×20%)을 공제하면 48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기준보수인 80만 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기준보수인 80만 원이 됩니다.(경비 공제 후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 월평균소득이 90만 원인 경우 경비 18만 원(90만 원×20%)을 공제할 경우 72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 하한액인 80만 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하한액인 80만 원이 됩니다.
-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경비 20만 원(100만 원×20%)을 공제할 경우 8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 하한액(기준보수)인 80만원과 동일하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월평균보수 하한액(기준보수)인 80만원이 됩니다.
-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경비 40만 원(200만원×20%)을 공제할 경우 16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 하한액인 80만 원 이상이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160만 원이 됩니다.

20. 소득이 낮은 예술인이나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사업체는 예술인 고용보험료 납입 부담이 큰데 이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예술인 사용 사업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환수합니다.

- 예술인 사용 사업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환수합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의 예술인이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술인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제외됩니다.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감사합니다

전국민고용안전망강화추진TF